

증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2003. 12 .15
규 칙 제25호]

개정 2004. 9. 17 규칙 제 64호
개정 2004. 12. 24 규칙 제 66호
개정 2005. 4. 22 규칙 제 82호
개정 2007. 8. 3 규칙 제122호
개정 2008. 1. 18 규칙 제133호
개정 2008. 8. 6 규칙 제14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9. 2. 27 규칙 제152호
일부개정 2010. 7. 16 규칙 제168호
일부개정 2011. 1. 24 규칙 제17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 5. 27 규칙 제183호
일부개정 2013. 5. 3 규칙 제219호
일부개정 2013. 10. 25 규칙 제229호
일부개정 2017. 4. 21 규칙 제315호
전부개정 2018. 12. 28 규칙 제352호
일부개정 2020. 10. 16 규칙 제387호
일부개정 2020. 12. 29 규칙 제39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2. 29 규칙 제428호
일부개정 2023. 2. 24 규칙 제43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군수, 실국장, 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 팀장, 주무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29>

제4조(사무분배의 원칙) ① 일반적인 사무분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29>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바. 고도의 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예외적 사항의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국장, 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3. 실국장

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실국의 주요업무나 기본계획 설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집행

나. 단순 인·허가 사항의 결정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마.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5. 읍·면장의 전결사항

가. 읍·면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나. 읍·면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읍·면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이·반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

사. 팀장,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6.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각종 증명 발급 및 사실 확인 업무,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라. 읍·면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마. 그 밖에 읍·면장이 지정하는 사항

7. 주무관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대상 사무) ① 본청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준용한다. 다만, 증평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군정의 중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 등의 경우에는 군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④ 별표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과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6조(전결처리의 특례) 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사안의 중요성 등으로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협의) ①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0. 16, 2020. 12. 29, 2022. 12. 29>

1.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사항: 기획예산과장

증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2.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 기획예산과장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행복돌봄과장
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해당 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의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합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위임전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권자는 위임전결 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은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임전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2018. 12. 28 규칙 제352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16 규칙 제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9 규칙 제39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4 규칙 제4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별표 1] 〈개정 2023. 2. 24〉

[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화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표 2] <개정 2023. 2. 24>

[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화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